

특정감사

2016년 직무급 및 수당 특정감사 처분요구서

2017. 5.



한국문화예술위원회
Arts Council Korea

목 차

I. 감사 개요	3
II.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	4

I. 감사 개요

1. 감사 배경 및 목적

- 공공기관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강화
- 직무급 및 각종 지급에 대한 적정성 여부 점검

2. 감사범위

- 2016년 직무급 지급현황 전반
- 2016년 수당(시간외수당 등)

3. 감사기간 및 인원

- 예비조사 : 2017. 4. 17. ~ 4. 21.
- 실지감사 : 2017. 4. 27. ~ 5. 9.
- 감사반 편성 : ○○○○ 감사부장(감사반장), ◎◎◎ 과장,
◇◇◇ 사원

4. 감사 중점사항

- 직무급 및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방만 경영 사례 적발 등 감시 및 견제 활동 강화

Ⅱ.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

번호	제 목 (지적사항)	처분 요구사항	비고
1	직무급 연말 소급분 과다 지급	시정(환수)	
2	시간외 수당(휴근수당) 지급 부적정	시정(환수)	

한 국 문 화 예 술 위 원 회

시 정(환수)

제 목 직무급 연말 소급분 과다 지급

관 계 부 서 기획조정부

내 용

「보수규정」 제2조(용어의 정의와 보수체계) 제4항에 “직무급이라 함은 위원회의 직무를 등급화하여 분류하여 직원이 맡고 있는 직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하며 직무급의 운영은 보수규정시행세칙에 따른다”라고 되어 있으며, 동 규정 제6조(휴가·휴직 기간의 보수) 제2항 제1호에는 “인사관리규정 제34조 제1호, 제4호 내지 제7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”라고 명시되어 있다.

따라서 2016년도 연말에 소급하여 지급한 직무급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연도 중반 신규입사자 및 휴직자에게는 근무월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그런데 “2016년 연차휴가 보상수당 등 지급계획 수립(기획조정부-14715)”에 근거하여 기획조정부에서는 연말에 전직원(정규직+무기계약직)에게 2016년 직무급을 월 100,000원씩 소급하여 직원 당 총 1,2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“직무급”은 직원이 맡고 있는 직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하며, 이에 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직무를 맡고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임에도, 2016년 연말에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 직무급 대상자 중 직무를 맡고 있지 않는 연도 중반 신규입사자 및 휴직자 등 지급 대상자가 아닌 총 44명 직원(‘별첨. 직무급

과다 지급 내역_별도붙임' 참고)에게 일괄적으로 개인당 1,200,000원씩 지급하였다.

또한, 2016년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에 따른 노동조합의 고발 등 노사관계 악화로 인하여 임금협약 체결이 12월에 종료되고, 연말 소급 직무급 지급 시 당해 연도 지출결의 마감일인 12월 28일에 긴급하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부서장 및 담당자의 세밀한 지급 대상자 검증절차 없이 중도 신규입사자 및 휴직자에게도 1년간의 직무급을 전액 지급한 점은 급여지급 업무를 긴급하게 처리하면서 발생한 실수라고 할 수 있으나, 총 44명에게 과다 지급된 직무급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.

조치할 사항

○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

- ① 2016년 연말 직무급 소급 지급과 관련하여 총 44명에게 과다 지급 된 직무급 총 20,200,000원을 환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. [시정(환수)]
- ② 2016년 연말 직무급 소급 지급 과정에서 세밀한 지급 대상자 검증절차 없이 직무급을 지급한 당시 기획조정부장(□□□), 담당자(△△△)에게 주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. [주의요구]

한 국 문 화 예 술 위 원 회

시 정(환수)

제 목 시간외 수당(휴근수당) 지급 부적정

관 계 부 서 기획조정부

내 용

「직원복무규정」 제10조(대휴)에 “업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9조에 해당하는 휴일에 근무하거나 휴가 중에 근무한 직원은 대휴를 할 수 있다.” 라고 되어 있으며, 「보수규정」 제17조 2항에 “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기준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.” 라고 명시되어 있다. 또한, 2016년 단체협약 제39조(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) 2항에 따르면 “연장근로·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.” 라고 되어 있다.

따라서, 「직원복무규정」 제9조(휴일)에 해당하는 휴일에 근무한 직원은 관련 규정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,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거나,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체휴일을 신청할 수 있다.

그런데, 2016년 창의예술인력센터 직원 ▽▽▽ 전문위원은 2016. 5. 15(일) 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무명령을 신청(관련문서 : 창의예술인력센터-1608<2016.05.04.> “휴일근무명령” 내용 중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을 사용한다고 명시)하여 2016. 7. 25 ~ 7.26 중 1일을 대체휴일로 사용하였으며, 2016. 5. 15(일)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도 신청하여 2016. 6월 급여 지급 시 휴일근로수당 340,504원을

수령하였다. 이는 휴일근무명령 시 휴일근로에 대해 대체휴일을 사용한다고 근무 명령을 내고, 2016. 5. 15(일) 휴일근무에 대해 중복하여 대체휴일을 사용하고 휴일 근로수당을 수령하였다.

조치할 사항

○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

휴일근무에 대한 중복 대체휴일 사용 및 휴일근로수당을 신청하여 부적정하게 수령한 창의예술인력센터 ▽▽▽ 전문위원의 휴일근로수당 340,504원을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.